

고령친화용품 표준화를 위한 분류

김이순 · 권자연¹ · 김경철^{2*} · 신순식² · 문인혁³ · 황이철³

동의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1: 고령친화용품 표준화기반구축센터, 2: 한의과대학, 3: 공과대학 메카트로닉스학과

Classification for a Standardization System for the Elderly's Needs

Yi Soon Kim, Ja Youn Gwon¹, Gyeong Cheol Kim^{2*}, Soon Shik Shin², Inhyuk Moon³, Lee Cheol Hwang³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atural Science, 1: Center for Standardization of senior-assistive Products, 2: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3: Department of Mechatronics Engineering, Center for Standardization of senior-assistive Products(CSSAP), Dongeu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ovide definitions and standardization for necessities that elderly people can use conveniently and properly in their daily lives and classify necessities for different purposes. First, standard terminologies were defined by reviewing the literature and the relevant laws related to daily necessities for the elders. Secondly, a concept for necessities for the elders was also defined through consultation with experts. Lastly, the elderly's necessities were selected and classified. The elderly's necessities are defined as aids that ordinary elderly people in normal aging process need for the purpose of the convenience of life and aids they wear or use to maintain or improve their health. In this study, the elderly's necessitie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necessities of health, necessities of Oriental medical aids and necessities of daily living. Each category is further classified as follows: Necessities of health include aids for personal medical treatment, aids for personal care and protection and aids for recreation. Necessities of Oriental medical aids include aids for personal medical treatment, aids for personal care and protection and others. Necessities of daily living include aids for personal care and protection, aids for personal mobility, aids for housekeeping, furnishings, aids for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signalling, aids for handling products and goods and aids for recreation. The classification of the elderly's necessities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information for further studies of demand for necessities for the elderly. The results will lay the foundation for a standardization system for the elderly's necessities and the development of silver industry.

Key words : Standardization System, the Elderly's Needs

서론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돌입하였고,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¹⁾.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1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는 생산인구비율 하락, 경제성장을 저해, 1인당 소득증가율 둔화, 사회보장성 지출의 증가, 국민의료비 증가, 가족의 고령자에 대한 부담

부담 증가 등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1,4)}. 우리나라 노인 대부분은 관절염, 요통 및 좌골통, 고혈압, 당뇨병, 위장 질환 등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노인건강문제의 특징은 노화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 저하가 상호 연관되어 나타나는 복합적인 것이며,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생활습관의 누적된 결과로³⁾, 일시적인 질병치료로 건강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노인이 가지는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인조차 노화과정에서 경험하는 건강의 위협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인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오늘날 생활수준향상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건강용품, 한방용품, 생활용품 등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노인층은 양방의료에 비해 한방의료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어^{4,5)} 한방용품을 비롯한 건강용품 수요가

* 교신저자 : 김경철, 부산시 진구 양정2동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imkc@deu.ac.kr, · Tel : 051-850-8649

· 접수 : 2006/01/23 · 수정 : 2006/03/05 · 채택 : 2006/03/31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용품은 노인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노인의 자기건강관리에 자신감과 만족감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실황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품들은 노인의 신체적, 생리적, 인지적 특성에 알맞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또한 노인에게 적합한 생활용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은 실정이다¹⁾. 이제 급변하는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의 건강 뿐 아니라 고령친화 생활환경을 고려하여야 할 시점으로, 지금까지 정상 성인 중심 생활측면의 보건의료환경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주 대상이 될 노인 중심의 생활서비스망도 함께 구축하여 앞으로의 고령사회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고령친화용품 표준화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미비하지만, 고령사회를 대비한 서비스 제공과 사회제도의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4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운영하여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였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마련됨으로써, 2006년부터 본격적인 고령친화용품산업화가 활성화될 전망이다¹⁾. 이에 따라 2005년 9월 산업자원부에서는 고령친화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고령친화용품 표준화를 고령친화산업의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용품 표준화로 고령자 스스로 보다 적극적인 자기건강관리를 통해 노화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불편감을 최소화하면서 건강을 유지·증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에 적합한 생활용품의 개발 및 표준화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고령친화용품 표준화에 앞서, 현재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용어 정의와 품목조차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서비스망 구축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마련하고 분류하여 고령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적합한 고령친화용품 표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분 론

1. 고령친화용품의 정의

1) 용품과 기기에 대한 용어 정의

고령친화용품을 분류하기에 앞서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정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용품, 기기, 용구가 혼용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의가 앞서 요구된다. 용품, 기기, 용구에 대한 영어 표기를 살펴보면, 용품(用品)이란 supplies or an article⁷⁾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식품(food), 기구(equipment), 기타 필수품⁸⁾이다. 기기(器械, 機器)란 machinery and tools 혹은 an instrument⁷⁾로 과학적인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tool)나 장치(device)⁸⁾이다. 용구(用具)⁷⁾란 a tool(공구), an instrument(기구), implements(연장), goods, an appliance(장치)이다. 용품(用品), 기기(器械, 機器), 용구(用具)의 한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용품(用品)⁷⁾이란 用品으로 쓰는 物品, 필요(必要)한 物品(物品)으로 사용의 주체가 사람이며, 여러 가지 물품을 의미할 수 있다. 반면에, 기기(器械, 機器)⁹⁾는

기구(器具), 기계(機械)의 총칭으로 고정된 실체를 의미하며 의미적으로는 주체는 사람이 아닌 기계이다. 따라서 기기는 흔히 의료 전문가들이 질병을 진단하는데 사용한다. 용구(用具)⁷⁾는 무엇을 하거나 만드는데 쓰이는 기구로 일본에서 재활보조기구 관련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2004)¹⁰⁾에서는 재활보조기구 분류표에서 영문표기 Aids를 용구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의료용품, 한방용품, 건강용품에 대한 정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료기기법 제1장 제2조(정의) 1항¹¹⁾에 “의료기기”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 복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¹²⁾에서 의료용품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정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 규정에서 살펴보면, 의료용품은 의료재료로 의료인이 사용하는 용품이다. 이와 같이 의료기기의 대상은 사람 또는 동물로 주체는 의료기기가 된다. 물론 사용자는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품이란 단어는 전문가 보다 일반인이 주체가 되어 이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을 뜻하며 전문가용 기기가 아닌 일반인용 기기가 자신의 생활 편리나 건강 목적으로 사용이 될 경우 용품이라 할 수 있다.

2) 고령친화 건강용품, 한방용품, 생활용품에 대한 정의

현재 일본 등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노인을 위한 용품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노인을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어 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 분류에 따르고 있다. 현재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살펴보면, 복지용구, 복지기기, 의료기기, 의료용품, 재활기기, 생활용품, 건강생활용품, 건강용품, 한방용품 등이 있다. 복지기구나 복지용구는 재활보조기구를 의미하는데¹⁰⁾ 이들 용어에 대해 혼용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관련 기관에서 나름대로 용어를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 의료기기는 전문가가 사용하는 기계나 기구로, 의료용품 역시 전문가가 사용하는 물품이라고 하고, 재활기기는 전문가를, 재활용품은 장애인을 사용 주체로 본다. 따라서 고령친화용품의 사용 주체는 고령자 자신이므로 건강용품, 한방용품, 생활용품이 고령친화용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생활용품을 건강용품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고령친화용품 즉 고령친화 건강용품, 고령친화 한방용품, 고령친화 생활용품에 대해 정의해 보았다. 우선, 고령친화가 아닌 일반적인 건강용품, 한방용품, 생활용품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건강용품은 일반인이 자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이다. 한방용품은 일반인이 자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물품이다. 생활용품은 의식주를 포함한 소비재상품으로, 생활의 편리성을 강조한 물품이다. 이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건강용품은 전문가나 관련

종사자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건강 진단이나 치료의 목적이 아닌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이다. 한방용품은 개인이 자신의 기혈순환을 원활히 도와 자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침, 뜸, 부항 등은 일반적으로 건강용품이라기 보다 한방용품으로 불리며 또한 기존의 건강용품으로 고려되는 한의학적 원리(온냉요법과 지압이나 맛사지 같은 자극요법 등)를 적용한 용품을 한방용품으로 분류하였다. 생활용품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기가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는 생활의 편리성이 건강의 측면보다 강조되면 건강용품이나 한방용품이 아닌 생활용품이라 분류하였다. 그러므로 국민소득이 증가되면서 과거에는 생활용품이었던 것이 현재에는 건강용품이나 한방용품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어, 시대에 따라 생활용품과 건강용품과 한방용품의 품목은 바뀔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고령친화용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고령친화 건강용품은 환자와 장애인이 아닌 노화과정에 있는 고령자가 자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신체에 착용하거나 적용하는 물품이다. 고령친화 한방용품은 환자와 장애인이 아닌 노화과정에 있는 고령자가 자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물품이다. 고령친화 생활용품은 환자와 장애인이 아닌 노화과정에 있는 고령자가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식주 관련 물품이다.

2. 고령친화용품의 분류

본 연구에서의 고령친화용품의 분류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재활보조기구 분류체계¹⁰⁾를 토대로 하여 시도되었고 그 기준은 본 연구에서의 고령친화용품 정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 분류 기준을 앞에서의 용어 정의에 근거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친화 생활용품은 의식주를 포함한 소비재 물품으로 주로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강조한 품목이며, 고령친화 건강용품은 인간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품목이며, 고령친화 한방용품은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용품으로, 이 용품들의 주체는 전문가도 공급자도 아닌 고령자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라는 것이 본 연구에서의 분류의 초점이 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재활보조기구 분류체계에 따르면, 대분류는 치료훈련기기, 기능훈련기기, 보조기/의지, 위생용품, 이동기기, 가정용품, 가구/건축용품, 커뮤니케이션기기, 물품취급보조기구, 환경개선기기, 오락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재활보조기구 분류체계에서 대분류는 치료훈련용품, 의지/보조기, 개인위생/보호용품, 이동기기, 가사용품, 가구·건축물용 부대시설, 정보통신기기, 조작용품, 환경개선기기, 레크레이션 용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분류체계에 근거해 고령친화 건강용품, 한방용품, 생활용품의 대분류와 중분류를 마련하였고 품목을 선정하였다. 고령친화 건강용품의 대분류로는 치료훈련용품, 개인위생 및 보호용품, 레크레이션용품로 나누고, 고령친화 한방용품에서는 치료훈련용품, 개인위생 및 보호용품, 기타가 대분류로 선정되었으며, 고령친화 생활용품의 대분류로는 개인위생/보호용품, 이동기기, 가사용품, 가구용품, 커뮤니케이션

기기, 물품취급보조기구, 레크레이션용품으로 구분된다. 고령친화 한방용품의 대분류 '기타'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재활보조기구의 분류체계에는 없는 대분류 목록으로 본 연구에서 추가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고령친화용품별 대분류별 중분류를 살펴보면 <표1>와 같다. 국제표준화기구 재활보조기구의 대분류 「치료훈련기기」에서의 중분류는 호흡기 치료용품, 순화기 치료용품, 광선치료용품, 복부탈장용품, 투석치료용품, 투약용품, 소독장비, 신체기능 및 생리학적 생화학적 검사기재, 인지검사기재, 자극장치, 온열 및 한냉용법 용품, 욕창예방용품, 지각훈련기기, 시각기능훈련용품, 척추견인요법용품, 운동·근력·균형 훈련기기이다. 이에 대한 본 연구에서 고령친화용품 대분류명은 치료훈련용품으로, 고령친화 건강용품의 중분류는 호흡기치료용품, 신체기능 및 생리학적 생화학적 검사기재, 자극장치, 욕창예방용품, 시각기능훈련용품이다. 고령친화 한방용품의 중분류는 탕제용품, 자극장치, 온열·한냉용법 용품으로, 탕제용품은 ISO의 투약품구의 명칭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국제표준화기구 재활보조기구의 대분류 「위생용품」에서의 중분류는 의류와 구두, 신체착용형보호용품, 갱의용품, 화장실용품, 기관절개자용품, 개구용품, 피부보호용품, 채뇨기, 집뇨기, 기저귀용품, 요실금/변실금 방지용품, 목욕용품, 매니큐어 패트큐어용품, 머리손질용품, 치아/구강손질용품, 세면/피부관리용품, 체온·체중측정용품, 시계, 성행위보조구이다. 본 연구에서의 고령친화용품 대분류명은 개인위생 및 보호용품으로, 고령친화 건강용품의 중분류는 의류와 구두, 신체착용형보호용품, 화장실용품, 기저귀용품, 목욕용품, 체온·체중측정용품, 시계이다. 고령친화 한방용품의 중분류는 의류와 구두, 머리손질용품이다.

국제표준화기구 재활보조기구의 대분류 「오락기구」에서의 중분류는 완구, 게임, 스포츠, 악기, 사진용품, 수예용품, 원예용품, 수렵용품 및 낚시용품, 캠프용품, 낚시용품, 애완동물이다. 이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대분류명은 레크레이션용품으로, 고령친화 건강용품의 중분류는 운동용품 하나로 분류하였다. 이는 레크레이션용품의 중분류가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새로 분류된 대분류는 기타로, 고령친화 한방용품에서 중분류명으로 신체장식품이라 하였다.

그리고 대분류 「치료훈련용품」의 중분류에 따른 고령친화용품별 세부품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친화 건강용품의 중분류 「호흡기치료용품」에는 가슴기, 코클린플러스, 개인용 코질환레이저조사기, 중분류 「신체기능 및 생리학적 생화학적 검사기재」에는 혈압기, 맥박측정기, 혈당측정기, 만보계, 채혈기, 중분류 「자극장치」에는 저주파자극기, 적외선조사기, 중분류 「욕창예방용품」에는 요실금패드, 기저귀방수커버,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방수시트, 중분류 「시각기능훈련용품」에는 돋보기, 저주파눈자극기가 속한다. 둘째, 고령친화 한방용품의 중분류 「탕제용품」에는 홍삼액제조기, 중탕기, 약탕기, 중분류 「자극장치」에는 침과 침판, 지압기, 맛사지기, 부항기, 중분류 「온열·한냉용법 용품」에는 좌훈기, 좌욕기, 찜질기, 냉온찜질팩, 족(각)탕기, 썬뽀기, 부뽀기, (욕)매트가 속한다.

대분류 「개인위생 및 보호용품」의 중분류에 따른 고령친

화용품별 세부품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친화 건강용품의 중분류 「의류 및 구두」에는 건강양말, 건강신발, 건강발창, 중분류 「신체부위보호용품」에는 장갑, 마스크, 발목 등 각종 보호대/지지대, 선글라스, 정맥류스타킹, 「화장실용품」에는 소변기, 좌변기, 변기의자, 이동변기, 중분류 「기저귀용품」에는 성인용기저귀, 기저귀커버(팬티), 중분류 「목욕용품」에는 목욕의자, 미끄럼방지용 슬리퍼, 미끄럼방지용 손잡이, 욕조, 샤워기, 목욕보조대, 중분류 「체온·체중측정용품」에는 체온계, 체중계, 운습도계, 신장·체중자동비만측정기, 중분류 「시계」에는 타이머가 속한다. 둘째, 고령친화 한방용품의 중분류 「의류 및 구두」에는 천연 한약재를 이용한 신발발창, 중분류 「머리손질용품」에는 건강빗이 속한다.

대분류 「레크레이션용품」의 중분류에 따른 고령친화용품별 세부품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친화 건강용품의 중분류 「운동용품」에는 운동볼, 아령, 근력강화밴드, 악력운동기, 홀라우프, 줄넘기, 모래주머니, 스테퍼(Stepper), 러닝머신, 실내용자전거, 역기가 속한다.

마지막으로 대분류 「기타」의 중분류에 따른 고령친화용품별 세부품목에서 고령친화 한방용품의 중분류 「신체장식품」에는 건강목걸이, 건강팔찌가 속한다.

표1. 고령친화 건강용품과 한방용품

대분류	중분류	품목	
		고령친화 건강용품	고령친화 한방용품
치료 용품	호흡기치료 용품	가습기, 코클린플러스, 개인용코질현레이저조사기	-
	탕제용품	-	홍삼액제조기, 증탕기, 약탕기
	신체기능 및 생리학적 생화학적 검사기재	혈압기, 맥박측정기, 혈당측정기, 만보계, 체열기	-
	자극장치	저주파자극기, 적외선조사기	침과 침관, 지압기, 맛사지기, 부항기
온열·한냉 요법 용품	-	-	좌훈기, 좌욕기, 찜질기, 냉온찜질팩, 족(각)탕기, 쑤뜸기, 부뜸이, (욕)매트
	목장애방용 품	요실금팬티, 목장애방매트리스, 바수시트	-
시각기능 향진 용품	시각기능 향진 용품	돋보기, 저주파눈자극기	-
	의류 및 구두	건강양말, 건강신발, 건강발창	천연 한약재를 이용한 신발발창
개인 위생 및 보호 용품	신체착용형 보호용품	장갑, 마스크, 발목보호대, 무릎 보호대, 종아리보호대, 허벅지 보호대, 손가락지지대, 손목보 호대, 허리지지대, 복부지지대, 어깨보호대, 오십견벨트, 선글라스, 정맥류스타킹	-
	화장실용품 기저귀용품	소변기, 좌변기, 변기의자, 이동변기 성인용기저귀, 기저귀커버(팬티)	-
머리 손질 용품	목욕용품	목욕의자, 미끄럼방지용 슬리퍼, 미끄럼방지용 손잡이, 욕조, 샤워기, 목욕보조대	-
	머리손질용품	-	건강빗
레크 레이 션 용품	체온·체중 측정용품	체온계, 체중계, 운습도계, 신장·체중자동비만측정기	-
	시계	타이머	-
기타	운동용품	운동볼, 아령, 근력강화밴드, 악력운동기, 홀라우프, 줄넘기, 모래주머니, 스테퍼(Stepper), 러닝 머신, 실내헬스용 자전거, 역기	-
	신체장식품	-	건강목걸이, 건강팔찌

3. 고령친화용품 정의와 분류에 대한 어려움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정의와 분류에서 사용주체에 대한 문제와 노인과 장애인의 구분 문제가 있었다. 첫째,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전문가, 공급자, 사용자에 따라서 용어 정의가 달라지고 그 품목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용품의 주체가 고령자로 전문가나 공급자 입장에서 기술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 둘째, 노인과 장애인을 구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재활보조기이라 표현하는 복지용구의 대상으로 장애인과 노인을 같이 고려하였으나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노인을 장애인과 구분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 역시 재활보조기구의 대상으로 장애인으로 규정하여 노인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장애인과 달리 고려하였다. 그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정상 노화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그 과정은 신체적 기능 저하 뿐 아니라 인지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저하 등이 상호 연관되어 나타난다. 단, 그 심각성 정도에 따라 장애자로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노인에게 적합한 용품이 그들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건강문제 취약자나 장애인들도 사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국내 최초로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고 분류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오늘날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생활수준향상, 만성질환의 증가, 건강에 대한 인식고조와 더불어 노인들의 고령친화용품 즉, 건강용품, 한방용품, 생활용품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개념 정의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고령친화용품 산업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마련하고 분류하여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적합한 고령친화용품 표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방법은 첫째 용품과 관련된 문헌조사와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용품에 대한 용어 정의를 만들었다. 둘째, 고령친화산업 전문가 집단 검토를 여러 차례 거쳐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다. 셋째, 고령친화용품을 분류하고 품목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령친화용품의 정의 : 고령친화용품이란 환자와 장애인이 아닌 노화과정에 있는 고령자가 생활의 편리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물품과 자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신체에 착용하거나 적용하는 물품이다. 고령친화용품은 고령친화 건강용품, 한방용품, 생활용품 세 가지로 나뉜다.

고령친화 건강용품, 한방용품, 생활용품의 정의: 고령친화 건강용품이란 환자와 장애인이 아닌 노화과정에 있는 고령자가 자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신체에 착용하거나 적용하는 물품이다. 고령친화 한방용품이란 환자와 장애인이 아닌 노화과정에 있는 고령자가 자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한의학적인 원리를 적용한 물품이다. 고령친화 생활용품이란 환자와 장애인이 아닌 노화과정에 있는 고령자가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식주 관련 물품이다.

각 용품의 대분류에서 고령친화 건강용품에는 치료훈련용품, 개인위생/보호용품, 레크레이션용품이 있다. 고령친화 한방용품에는 치료훈련용품, 개인위생/보호용품, 기타가 있다. 고령친화 생활용품에는 개인위생/보호용품, 이동기기, 가사용품, 가구용품, 커뮤니케이션기기, 물품취급보조용품, 레크레이션용품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고령친화용품의 정의와 분류는 국내 최초로 시도하였으므로 추후 이와 관련된 수정과 보완이 뒤따라야하며, 노인과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이 같을 수 없으나 구체적인 차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_1, 2004.
2.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노인복지정책관련 국민대토론회, 2000.
3.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기초의학연구소. 지역 사회 건강증진사업 전략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1999.
4. 전임근. 한방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및 이용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보건학 박사학위논문, 2003.
5. 김이순. 뇌졸중 환자의 한방의료 이용 경험. 한국보건간호학회 11(1), 1997.
6. 산업자원부. 고령친화산업발전방안-5대전략 및 10대 정책과제, 2005.
7. <http://dic.search.naver.com>
8. <http://eedic.naver.com>
9. <http://hanja.naver.com>
10.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재활보조기구 표준화 수요조사 연구, 2004.
1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법, 2003.
12.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2005.